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현장별보증 주요 질문 안내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안내용

2019. 9.

동 자료는 조합원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동 내용과 관련하여 조합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The Best Guarantee



건설공제조합
Construction Guarantee

목차

1. 보증서 발급	시행일 이전 계약한 공사의 현장별보증서 발급 여부	01
	현장별보증의 원도급과 하도급 중복 여부	02
	원도급금액 1억원 미만 공사의 현장별보증서 발급 여부	03
	산출내역서의 건설기계대여금액 400만원 판단기준	04
	건설업종별 투입비율 구분 기준	05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과 수수료요율의 관계	06
	현장별보증 업무약정서의 제출방법	
	현장별보증 발급 보증기관 조회 방법	07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현장별보증서 발급	
	장기계속공사의 현장별보증서 발급	08
	현장별보증 발급대상관련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1인신청 가능여부	
2. 개별확정	개별확정의 개념	09
	대여계약금액 200만원 이하의 대여계약서 제출 여부	10
	대여계약서 제출 여부	
	공동공사의 대여계약서 제출방법	11
	현장별보증서 발급 및 개별확정 확인 방법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여계약서 제출	12
3. 관련법령 및 고시		
4. 건설공제조합 영업점현황		



1 보증서 발급



1. 현장별보증의 시행일(2019.06.19.)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공사에 대하여 현장별보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시행일 이전(2019.06.19.)에 계약체결된 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부칙에는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6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도 보증서 발급금액과 투입비율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장별보증은 시행일(2019.06.19.)이후에 최초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계속공사 또는 연부액공사는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다만, 원도급공사는 시행일이전에 체결되고 하도급공사는 시행일이후에 체결된 경우 원도급공사와 하도급공사는 현장별보증의 적용기준이 달라 동일한 현장에서 현장별보증과 대여계약별보증이 혼재될 수 있습니다.



2. 원도급과 하도급이 각각 현장별보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동일현장에서 현장별보증을 중복으로 발급하는 것은 아닌가요?



원도급과 하도급의 현장별보증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은 “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구분합니다. 즉, “종합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은 전문건설업종을 제외한 종합건설업종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대금을 대상으로 산출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종의 투입비율 2.8%는 총 도급금액 중 원도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대여금액(사용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도급금액 20억원의 건축공사인 경우, 56백만원(20억원 × 2.8%)이 원도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대여계약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원도급사업자가 발급하는 현장별보증은 원도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기계대여업자만을 보상하며, 하도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기계대여업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원도급사업자가 발급하는 현장별보증과 하도급사업자가 발급하는 현장별보증은 보상대상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 (주의점)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의 “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에 대한 기준이며 원도급과 하도급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과 구별해야 합니다.



3. 원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현장별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보증을 발급하면 되나요?



원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도 공사기간이 5월을 넘으면 현장별보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아래의 금액조건과 기간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현장별보증 대상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현장별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보증을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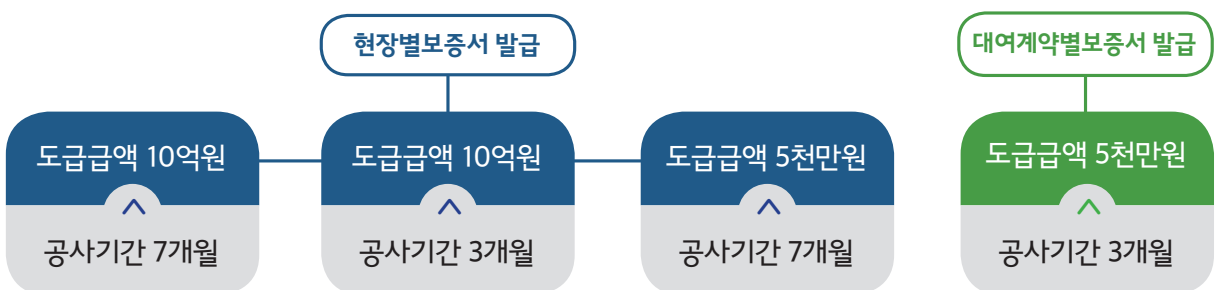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대여계약별보증의 발급대상(현장별보증 면제대상)은 도급금액과 공사기간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원도급의 경우,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예시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여계약별보증의 발급대상 공사라도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대여계약별보증 대신 현장별보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4. 현장별보증의 제외 가능대상인 "산출내역서의 기재된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산출내역서 중 "기계경비(중기임차료)"을 기준으로 하며 **조합원이 현장별보증발급대상여부를 판단하여 보증신청을 합니다.**

산출내역서에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과 관련한 항목으로 "기계경비(중기임차료)"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이 있습니다. 이 중 현장별보증의 면제대상인 400만원의 판단은 "기계경비(중기임차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기계경비(중기임차료)"은 대한건설협회가 완성원가 통계 자료 작성시 사용하는 명칭이며 현장에 따라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 따라 동 항목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동 항목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담당자가 판단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산출내역서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 ① 산출내역서의 관련항목금액은 변동가능성이 높으므로 조합이 현장별보증의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 ②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이하라도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현장별보증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의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합계금액과 관련하여 현장별보증 해당여부는 조합원이 판단하여 보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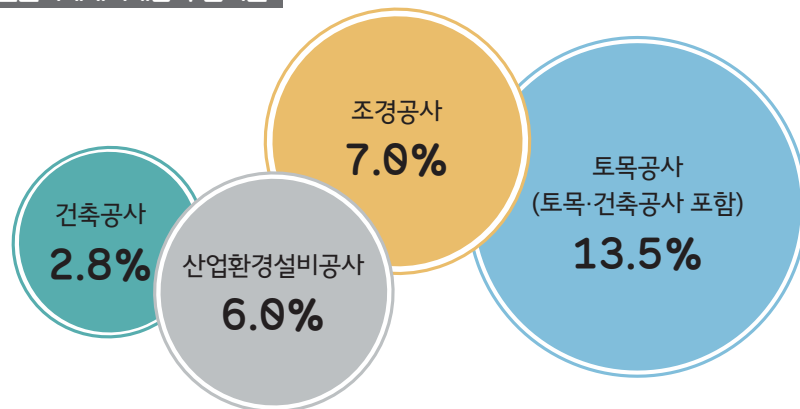


5.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의 건설업종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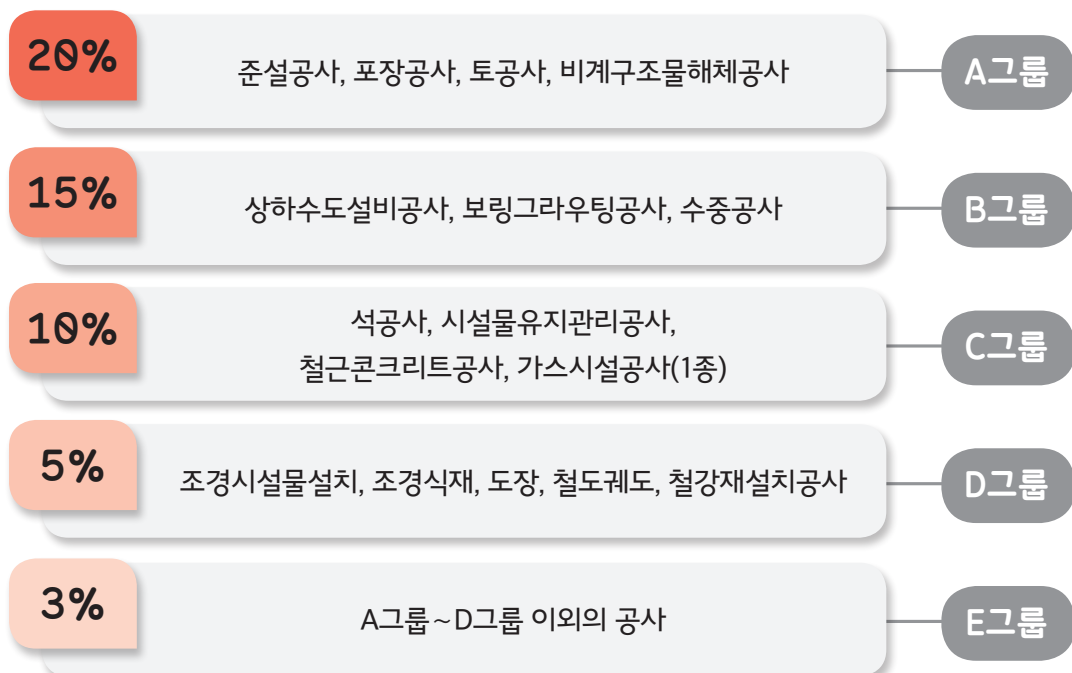


입찰공고문의 건설업종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공고문이 없는 경우 해당 공사의 주요 건설업종을 기준으로 하며 토목과 건축이 모두 필요한 경우는 토목공사로 분류합니다.

종합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전문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6. 현장별보증의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과 보증수수료요율은 같나요?



현장별보증의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은 보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 보증수수료요율은 아닙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은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공사원가를 분석하여 도급금액 중 원도급 또는 하도급의 건설기계대여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한 추정값입니다. 투입비율은 보증금액을 산출할 기준일 뿐입니다. 도급금액에 투입비율을 곱한 값은 보증금액이지 보증수수료가 아닙니다.

예시

건축공사이고 도급금액이 2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년인 경우

$$\text{보증금액} = 20\text{억원(도급금액)} \times 2.8\%(\text{건축 투입비율}) \div 12\text{개월} \times 4\text{개월} = 18\text{백만원}$$

$$\text{보증수수료} = 18\text{백만원} \times \text{보증수수료요율} \times \text{보증기간}$$

보증수수료는 보증금액에 기본요율, 운용요율,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므로 투입비율은 보증수수료요율과 다릅니다.



7. 현장별보증의 징구서류 중 현장별보증 업무약정서는 조합원이 날인하여 서면제출하여야 하나요?



현장별보증 업무약정서는 보증신청과 동시에 인터넷제출이 가능하며 별도 서면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이 인터넷으로 보증을 신청할 때 현장별보증의 업무약정서도 인터넷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현장별보증의 업무약정서는 현장별보증, 개별확정 등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알고 있어야 할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반드시 동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건설기계대여업자는 현장별보증을 발급한 보증기관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 조합 홈페이지의 “발급사실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현장의 관련 안내표지판으로도 현장별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합 홈페이지의 “발급사실조회”를 통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현장별보증 공시조회”를 클릭할 경우, 우리 조합에서 발급한 현장별보증을 공사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도 각사의 홈페이지에서 각사가 발급한 현장별보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은 해당 공사현장에 현장별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을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므로 공사현장에서 현장별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을 알 수 있습니다.



9.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도 현장별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민간공사도 현장별보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현장별보증, 대여계약별보증 포함)를 발급해야하는 현장을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고 않고 있으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간현장도 현장별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체공사에 대해 현장별보증서 발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에서 자체공사에 대한 현장별보증서 발급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별보증서 미발급에 따른 행정조치에 대한 책임이 조합원에게 발생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보호라는 현장별보증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장별보증 신청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로 현장별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장기계속공사 또는 연부액공사는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현장별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조합원은 현장별보증서를 발급 후 최초 도급계약의 착공일에 제출하면 됩니다. 장기계속공사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액은 투입비율과 4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습니다.

$$\text{보증금액} = \text{총공사금액} \times \text{투입비율} \times 4\text{개월분}$$



11. 부가가치세 포함한 도급금액으로 현장별보증 제외 또는 면제여부를 판단하는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2. 현장별보증의 경우 1인신청이 가능한지요?



현장별보증도 1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대채무확인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2 개별확정



1. 개별확정도 보증인가요?



개별확정은 건설기계대여업자를 보증채권자로 확정하는 절차이며 현장별보증의 보증금액을 안분하는 행위일 뿐 보증서 발급은 아닙니다.

보증한도 및 보증수수료는 현장별보증서를 발급 및 해제할 경우 발생이 되며 개별확정의 경우에는 보증한도 및 보증수수료의 변동은 없습니다.

보상을 위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는 조합으로부터 보증채권자로 확정을 받아야 하므로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조합원은 건설기계대여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개별확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건설기계대여계약서를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나요?



현장별보증 발급 후 대여계약금액과 상관없이 대여계약서를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대여계약서 제출과 관련하여 면제대상이 없습니다.

다만, 대여계약별보증은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서발급을 면제할 수 있지만 동 내용은 대여계약서 제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 현장별보증서 발급 후 건설기계대여계약을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나요?



현장별보증서 발급 후 대여계약을 현장별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서 체결 후 15일 이내에 현장별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대여계약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도 대여계약을 보증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제출된 대여계약서에 따라 보증채권자를 확정하고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보상을 위하여 대여계약서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 대여업자는 조합의 홈페이지에 대여계약을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여계약을 제출하는 경우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대여업자는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조합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동의에 승낙을 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세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⑤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보증기관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채권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4. 공동도급공사에서 대여계약서를 대표사(구성원)중 1인이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대여계약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공동도급공사에 대해 현장별보증을 구성원 각자가 각각발급한 경우, 조합원은 대여계약서 계약 당사자에 따라 대여계약서를 조합에 제출합니다.

대여계약형태	개별확정 책임 및 대여계약서 제출 의무	개별확정금액
대표사(구성원) 단독계약	대표사(구성원) 단독	대여금액 전액
대표사(구성원) 연명계약	대표사(구성원) 각자	대여금액을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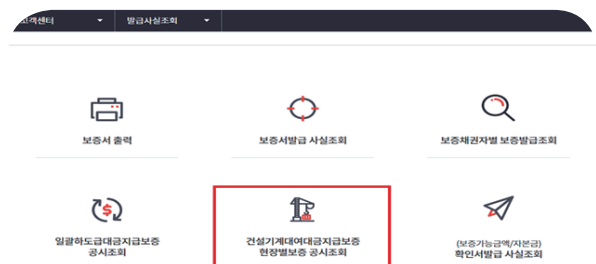


5. 건설공제조합에서 현장별보증서 발급 및 개별확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현장별보증서 발급 및 개별확정을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키스콘에서도 별도 조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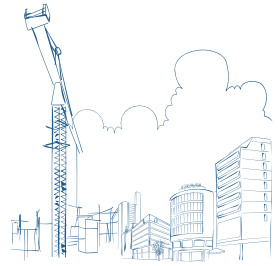




6. 건설기계대여업자도 대여계약을 제출할 수 있나요?



조합에서 해당 현장에서 현장별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조합의 홈페이지-인터넷창구에서 대여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관련법령 및 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④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과 보증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⑥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 7. (생략)

-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 ①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면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 ④ 법 제68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 ② 법 제68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2.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③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거나 해당 내용을 보증하는 보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발급연월일
 2. 도급·하도급 계약명(개별 건설기계 대여계약인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말한다)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5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 ④ 법 제68조의3제5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 가.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공사계약금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이라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나.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공사계약금액} \times \text{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 - \text{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 \times 4$$

2.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계약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건설기계 대여금액} - \text{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text{계약기간(월)}} \times 4$$

- ⑤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보증기관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채권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4항(개정안)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 보증금액 산정을 위한 업종별 건설기계투입비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

가.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포함)

①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

② 적용요율

종합건설 업종구분	적용요율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0.40%
건축공사	0.07%
산업·환경설비공사	0.16%
조경공사	0.18%

나.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①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

② 적용요율

구분		적용요율
A그룹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0.68%
B그룹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0.51%
C그룹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0.32%
D그룹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6%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10%

다.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① 보증서발급금액 : 하도급공사비 × 적용요율

② 적용요율

구분		적용요율
A그룹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0.48%
B그룹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0.36%
C그룹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0.24%
D그룹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2%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07%

※ 하도급내역서 작성시, 원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이 가, 다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증서 발급금액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 해당 부족분은 원하수급인이 부담하는 보증서 발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며, 하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은 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족분을 제외한 금액만 반영한다.

※ 하도급자가 실제 부담한 건설기계보증 수수료가 하도급내역서에 반영된 수수료 보다 많은 경우, 추후 원도급자는 원도급내역서의 보증수수료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보증수수료는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가. 종합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종합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공사계약금액 대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투입비율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13.5%
건축공사	2.8%
산업환경설비공사	6.0%
조경공사	7.0%

나. 전문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전문건설업종 구분		공사계약금액 대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투입비율
A그룹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20%
B그룹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15%
C그룹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10%
D그룹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5%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3%

4.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행정사항

가. 이 고시는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63호('16. 6.22)은 폐지한다.

지점현황

영업점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본부(고객상담실)	1588-1444	0605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종로지점	02-3449-2100	03188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5 관정빌딩18층
동대문지점	02-3449-2120	02582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10 한성빌딩 12층
여의도지점	02-3449-2130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4층
서초지점	02-3449-2140	066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7층 (서초동 1554 오피스빌딩)
삼성지점	02-3449-2160	0615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12층(삼성동, 연당빌딩)
인천지점	032-439-7197	21558	인천 남동구 미래로 7(구월동) 현대해상빌딩 3층
수원지점	031-253-1501	1627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05 (영화동 443-3) 건설회관 2층
안양지점	031-388-0103	140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69번길 22 (관양동 1588-8) 건설회관 2층
의정부지점	031-877-8191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의정부동 431-24) 구성타워 13층
부천시점	032-324-0384	1462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88 (상동 446) 한국산업은행빌딩 5층
성남지점	031-709-5979	135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2 (야탑동 367-1) BYC빌딩 7층
안산지점	031-413-2185	1547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고잔동710) 중앙법조빌딩 206호
일산지점	031-904-8671	104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1 교보생명빌딩 10층
춘천시점	033-253-5061	24217	강원도 춘천시 동면 후만로 166 건설회관 1층
강릉지점	033-641-6616	25555	강원도 강릉시 울곡로 2806 (옥천동 81-10) 한화생명빌딩 6층
원주지점	033-746-2217	26387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0 (무실동 1720-3) 금정타워 4층
삼척지점	033-574-6516	25920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07 (남양동) 대성빌딩 4층
청주시점	043-256-5156	287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34 (서운동 47-2) 외환은행빌딩 4층
충주시점	043-854-6720	27347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210 (금릉동 713) 칠화빌딩 4층
대전지점	042-489-7611	35261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6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전지사 빌딩 3층
내포지점	041-631-4101	32256	충남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158 센트럴타워 3층
천안지점	041-563-0820	31124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신부동 462-1) 소암빌딩 7층
전주지점	063-276-2031	54984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중화산동2가 241-2) 건설회관 3층
광주지점	062-363-0018	61926	광주광역시 서구 독립로 174 (양동 42-6)
순천시점	061-722-6057	57967	전남 순천시 이수로 296 (연향동 1317-1) 청우빌딩 6층
목포지점	061-283-3865	58690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306 (상동 889-2) 한국산업은행 목포지점빌딩 2층
대구지점	053-744-4790	41936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17층(덕산동, 삼성생명빌딩)
포항지점	054-281-9092	37831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71 7층
구미지점	054-456-5901	39281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7 (송정동 58) 용은빌딩 6층
부산지점	051-463-8147	4728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09(부전동) 서면금융프라자빌딩 6층
울산지점	052-245-1504	44417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79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2층
창원지점	055-294-3261	51316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50 (석전동 245-12)
진주시점	055-762-1217	52725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88 (칠암동 414-10) 아이비타워 601호
제주지점	064-744-1961	63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 (연동 301-1)